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599323	
등록번호	110111-5993236	
상 호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17층(서소문동, 태평로빌딩)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5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500,000 주	2016.10.08 변경
보통주식	500,000 주	2016.10.10 등기
제1종종류주식	1,500,000 주	
제2종종류주식	500,000 주	
	금 12,500,000,000 원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1. 부동산의 개발 1. 부동산의 임대차 1. 증권의 매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1.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감사 김상부 610821-*****

2019년 03월 28일 증임 2019년 03월 29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기동 600720-*****

2017년 03월 28일 취임 2017년 04월 10일 등기

2020년 03월 28일 중임 2020년 03월 30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호철 74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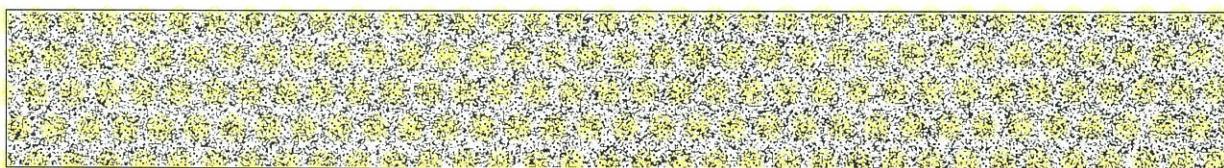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3239-BCTI-LCZC

128038921490001001410001200322130939T5M1B1J1UOL1S1+2 발행일: 2020/04/01

- 1/4 -



미별원

등기번호	599323
2017년 03월 28일 취임	2017년 04월 10일 등기
2020년 03월 28일 중임	2020년 03월 30일 등기
사내이사 이대운 541204-*****	
2019년 01월 22일 취임	2019년 01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이대운 54120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99, 604동 2001호(주엽동, 강선마을)	
2019년 01월 22일 취임	2019년 01월 2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① 회사는 일백오십만(1,5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주식을, 오십만(5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보통주식과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나 2021년 10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유자산 매각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다.

② 회사는 해산 결의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본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

③ 배당가능이익 중 아래에서 정의되는 운영이익을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

1. 운영이익과 처분이익

가. 운영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아래 처분이익을 공제한 금원을 말한다.

나. 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액 및 매각비용(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 매각자문보수, 중개수수료, 법률자문보수, 회계자문보수, 회사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상 정의된 매각 관련 비용 등 기타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

2. 배당 방식

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운영이익 한도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6.8%의 비율(이하 “우선배당률”)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어느 사업연도의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나. 운영이익 중에서 가.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따라 배당한다.

④ 배당가능이익에서 본 조 제3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처분이익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에, 70%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⑤ 회사가 청산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1. 제1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에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각의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제1호,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주식 수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에, 70%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

발급확인번호 3239-BCTI-LCZC

128038921490001001410001200322130939T5M1B1J1U0L1S1 2 발행일: 2020/04/01

- 2/4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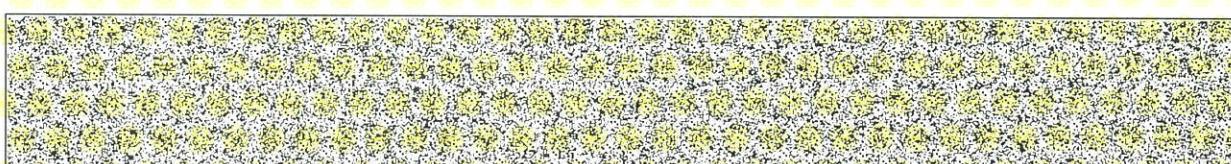
등기번호	599323
2016년 10월 05일 설정	2016년 10월 05일 등기
제2종종류주식	
<p>① 회사는 일백오십만(1,5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주식을, 오십만(5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보통주식과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나 2021년 10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유자산 매각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다.</p> <p>② 회사는 해산 결의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본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p> <p>③ 배당가능이익 중 아래에서 정의되는 운영이익을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이익과 처분이익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운영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아래 처분이익을 공제한 금원을 말한다. 나. 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액 및 매각비용(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 매각자문보수, 중개수수료, 법률자문보수, 회계자문보수, 회사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상 정의된 매각 관련 비용 등 기타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 2. 배당 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운영이익 한도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6.8%의 비율(이하 “우선배당률”)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어느 사업연도의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나. 운영이익 중에서 가.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따라 배당한다. ④ 배당가능이익에서 본 조 제3항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처분이익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에, 70%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⑤ 회사가 청산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에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각의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제1호,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보통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주식 수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에, 70%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 	
2016년 10월 08일 설정 2016년 10월 10일 등기	

회사설립연월일	2016년 03월 0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6년 03월 07일 등기
--- 이 하 여 백 ---	

발급확인번호 3239-BCTI-LCZC

128038921490001001410001200322130939T5M1B1J1U0L1S1 2 발행일:2020/04/01

- 3/4 -



대법원